

# 현장실습 운영규정

- 제 정 : 2012. 6. 29. □ 개 정 : 2017. 8. 31.
- 개 정 : 2014. 8. 27. □ 개 정 : 2019. 3. 1.
- 개 정 : 2016. 3. 9. □ 개 정 : 2019. 6. 18.
- 개 정 : 2017. 2. 17. □ 개 정 : 2020. 3. 13.
- 개 정 : 2020. 7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부 고시 제2017-115호에 의거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원과 학대학교 학칙 제8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4조, 제31조의9가 정하는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·외 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**제3조 (현장실습의 구분)** 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.

실습 유형	실습 명칭	실습 시점
현장실습 수업	현장실습 수업	학기 중
실습학기제	국내 학기제 현장실습	학기 중
	해외 학기제 현장실습	학기 중
	국내 계절제 현장실습	방학 중

**제4조(현장실습운영)** ① 현장실습은 총장의 전결위임을 받아 학과장 책임 하에 사전 안전교육, 성희롱 관련 교육 등 일정기간 준비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되,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한다.

② 현장실습 의무대상과의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필수로 한다.

③ 각 학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.

1. 현장실습대상자 선발 및 현장실습기관 모집관리
2.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학점인정

④ 각 학과장은 현장실습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로 하여금 현장실습기관에 현장실습중인 현장실습교육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실시한다.

**제5조(현장실습 기간 및 학점인정)** ① 국내 계절제 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4주(120시간)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.

② 해외 학기제 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, 기간은 15주 이상, 한 학기 22학점(현장실습 2학점포함)까지 부여 할 수 있으며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“P”, 또는 “F” 로 표시한다.

③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은 졸업학년도 2학기에 12주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후기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1학기에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학점인정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 (단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한 학기 최대 2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) 현장실습 과목을 전공 필수로 지정한 학과의 경우에는 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. 다만, 현장실습 내용과 소속학과의 전공 관련성이 60%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.

⑤ 현장실습수업은 정규학기 중에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습기관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써, 학기 수업의 일부를 실습으로 구성하거나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포함한다.

⑥ 현장실습수업은 현장실습 내용과 소속 학과의 전공 관련성이 60%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.

⑦ 국가적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운영방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규 : 2020.7.1.>

**제6조(신청자격 및 선발)** ① 국내 계절제 현장실습은 2년제는 2개 학기 이상, 3년제는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이 신청 할 수 있다.

②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의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졸업학년도 2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및 산업체(전공관련 산업체 취업자 포함)에서의 전공 관련 직무·교육·연수·연구 현장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.

2.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필히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i.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서 1부
- ii. 서약서 1부
- iii.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협약서 1부
- iv.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수업 계획서 1부

③ 해외 학기제 현장실습의 신청 자격 및 선발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1. 2년제는 2개 학기 이상, 3년제는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이 신청 할 수 있다.

2. 신청 학생의 최소 학점은 평균기준 3.00이상, 소정의 어학 능력자.

3. 선발인원은 시행일 기준 재학생 인원의 10%내에서 선발하고, 이상일 경우 산학협력위원회에서 어학능력, 전공지식 및 성적을 심사하여 선발한다.

4. 기타 실습기관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

**제7조(현장실습기관의 선정)**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업체 (단,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, 현장실습의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기관이라도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실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.) <개정 : 2020.3.13.>

① 현장실습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.

- ② 현장실습 파견으로 작업 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
- ③ 적성 및 현장 실습 파견 희망에 따라 전공학과와 관련이 있는 기관
- ④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기관
- ⑤ 기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

**제8조(현장실습의 협약 체결)** ①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하기 7일전까 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학교는 순회 지도를 통해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약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토록 요구한다.

**제9조(실습생 준수사항)** ① 실습생은 현장실습기관의 직무규칙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모교의 명예와 학생신분을 망각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며, 무단결석 등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학점을 불허하거나 실습기간을 무효로 할 수 있다.

- ②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바르게 실천한다.
- ③ 위험한 작업조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는,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.
- ④ 각종 민·형사 등의 법적인 문제, 제반 부당 행위 등의 사항들은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.
- ⑤ 현장실습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.

**제10조(성적평가)** ① 현장실습 성적은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지도 담당자가 평가한 성적과 대학에서 부과한 성적, 현장실습일지의 기록 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학과에서 평가한다.

② 국내 계절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현장실습 과제수행 평가서
- 2. 현장실습 출석부 <개정 : 2020.3.13.>
- 3.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<신규 : 2020.3.13.>
- 4.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<신규 : 2020.3.13.>

③ 해외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(학생)
- 2. 서약서
- 3. 보호자동의서
- 4. 현장실습 협약서
- 5.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(실습기관)

5-0-12 현장실습 운영규정

6. 현장실습 수행평가표

7. 현장실습 종합보고서

④ 국내 계절제 현장실습의 평가는 현장실습기관에서 평가한 현장실습평가서 60%. 해당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(담당교수)의 평가 40%로 한다.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평가는 아래사항으로 평가한다.

1. 현장실습기관 출결사항(조퇴, 지각 포함)
2. 실습일지 정리 상태
3. 담당교수의 지도사항 및 현장실습기관 적응능력

⑤ 국내 계절제 현장실습기간 4주 중 3일 이상 무단결근(지각, 조퇴 2회는 1일 결근으로 한다.)과 현장실습기관에서 평가한 성적의 합계가 36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수강 하여야 한다.

⑥ 해외 학기제 현장실습기간 15주 중 4일 이상 무단결근(지각, 조퇴 2회는 1일 결근으로 한다.)과 현장실습기관에서 평가한 성적의 합계가 36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⑦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와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(단, 실습기관의 사정에 의해 중단 될 경우는 남은 기간을 타 실습기관에서 이수할 경우 학점을 인정할수 있다.) <개정 : 2020.3.13.>

⑧ 해외 학기제 현장실습 실시 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추후 그 잔여기간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,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실시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.

⑨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기간 중 4일 이상 무단결근(지각, 조퇴 2회는 1일 결근으로 한다.) 할 경우와 산업체에서 평가한 성적의 합계가 35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참가 학생은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주간보고서(인턴학기 연수일지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실습 종료 후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⑩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현장실습기관 측 평가 50점, 학교 측 평가 50점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며, 총점 70점 이상은 Pass, 그 미만은 Fail로 판정한다. 해당 학과는 학생의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현장실습 지원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주간보고서.(인턴학기 연수일지)
2.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종합보고서.
3.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평가서.

⑪ 현장실습 수업 참가 학생은 현장실습 수업 주간보고서를 1주 단위로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수업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⑫ 현장실습 수업이 포함된 수업에 대한 성적평가는 산업체 현장 수업의 평가 결과와 학교수업

평가결과를 합산한다. 단, 현장실습기관 현장 수업에 대한 평가는 현장실습기관 측 평가 50%, 학교 측 평가 50%을 기준으로 한다.

**제11조(방문지도)** ① 국내 계절제 현장실습, 현장실습수업,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및 해외학기제 현장실습은 해당학과 전임교수 이상이 담당하고 현장실습 기간 중 기관을 방문하여 학생의 활동현황을 지도 점검하여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적절히 조치하도록 한다.

② 순회지도 담당교수는 순회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다만 원격지 및 해외의 경우에는 E-mail, Fax 등으로 지도한 내용을 송, 수신 또는 전화로 통화하여 국내 계절제 현장실습은 1회 이상, 해외 학기제 현장실습, 국내학기제 현장실습 및 현장실습수업은 그 기간에 따라 월 최소 1회 이상을 지도하여 순회지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및 현장실습수업 참가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전공내역과 현장실습의 연계성 및 실습에 관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현장실습지원센터)** ① 체계적인 현장실습 관리와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설치, 운영한다.

②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, 관련 규정 제·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·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
2. 실습기관의 수요조사,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
3.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
4.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
5.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
6.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
7.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
8. 그 밖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.

③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아래 각 호의 세부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습기관과의 협의·조정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실습기관 정보
2.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
3. 현장실습 대상 전공, 인원 및 학년
4.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
5. 현장실습지원비 및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
6.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

④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, 준수사항,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실시 중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사내규,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